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검 토 보 고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신설 등〉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1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5
나. 심리상담 활성화 필요성 및 제도적 현황	7
다.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는 절차 및 총괄적 쟁점	13
라.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4
2. 조문별 검토	16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6
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결격사유(안 제5조, 제6조)	19
다. 국가시험과 응시자격, 실무수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22
라.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안 제10조)	26
마.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교부(안 제11조)	26
바. 전문심리상담사 등록 및 등록거부와 취소(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27
사. 상담센터의 개설과 등록 취소(안 제15조, 제16조)	28
아.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30
자.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32

차. 보칙(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34
카. 별칙 등(안 제31조, 제32조)	36
타. 부칙	37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4. 9. 20.
- (3) 회부일 : 2024. 9. 23.

2. 제안이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는 임기 내에 일반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회복이라는 전(全) 단계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더불어 국민들은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

신적, 물질적 피해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기도 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음 건강 관리와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급은 공통적 상담역량을 갖춘 자, 1급은 전문영역의 상담역량을 갖춘 자로 구분함(안 제5조).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영역의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요건을 이수함과 동시에 3년 이상 전문심리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에게 1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8조).

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수련 및 감독관에게 수련지도 감독 및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 등 기록의무 등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내담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전문심리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자. 상담에 관한 연구, 전문심리상담사의 윤리 확립, 전문심리상담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유료로 상담행위를 하거나 유료전문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파.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심리상담사의 종류와 자격요건, 전문심리상담센터의 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전문심리상담사의 정의(안 제2조), ② 전문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하여 합격해야 하는 국가시험(안 제7조), ③ 전문심리상담사 직무를 개시하기 위한 등록 절차(안 제12조), ④ 등록된 전문심리상담사가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상담센터(안 제15조), 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심리상담사 아닌 자의 상담행위 금지(안 제27조) 등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 >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	정의	- 심리상담, 전문심리상담사,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한국전문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 등에 대한 정의
	제3조	직무	- 1급 및 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직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상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전문심리상담 사의 자격 등	제5조	자격	- 1급 및 2급 전문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제6조	결격사유	- 전문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는 사유
	제7조	국가시험	- 전문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하여 합격해야 하는 국가시험
	제8조	응시자격	-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제9조	실무수련	-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받아야하는 실무수련 과정
	제10조	전문심리상담 사자격 심의위원회	-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제3장 전문심리상담 사 등록	제11조	전문심리상담 사 자격증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
	제12조	전문심리상담 사 등록	- 전문심리상담사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제13조	등록거부	- 등록신청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제4장 상담센 터	제14조	등록취소	- 등록된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제15조	상담센터의 개설	- 등록된 전문심리상담사는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음.
	제16조	상담센터의 개설 등록 취소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상담센터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제5장 전문심리상담 사의 의무	제17조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제18조	비밀보장의무	- 상담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19조	상담기록부 등	- 상담기록부를 갖추어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제20조	기록 열람 등	- 내담자는 본인에 관한 상담기록부 확인 요청 가능
	제21조	명의대여 등 금지	- 전문심리상담사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
	제22조	보수교육	-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실시
제6장 한국전 문심리 상담사	제23조	한국전문심리 상담사협회	-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한 협회를 둠.
	제24조	윤리규정 제정	- 상담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협회	제25조	감독	-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음.
제7장 보칙	제26조	수수료	-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근거
	제27조	전문상담행위 의 제한	- 등록한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 금지
	제28조	보고와 감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 권한의 일부위임 및 업무의 일부 위탁 근거 규정
제8장 벌칙	제31조	벌칙	- 직무상 비밀누설 등 벌칙으로 제재
	제32조	과태료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 과태료로 제재
부칙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거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5년 이내에 이 법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심리상담 활성화 필요성 및 제도적 현황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였고, 2위 국가였던 리투아니아의 20.3명에 비하여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요 자살 원인으로서 정신건강 문제가 39.8%를 차지하였음. 또한 연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411만 명¹⁾에 이르며, 정신질환은 조기발견·개입 시²⁾ 약물 등으로 충분히 완치되거나 만성질환과 같이 관리 가능함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적기의 치료 조치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1)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상 F00~F99(국민건강보험공단, '21)

2) 정신질환은 국민의 27.8%가 일생 중 한 번 이상 경험(국립정신건강센터, '21년)하지만, 상당수는 자연치유 혹은 가벼운 치료로 완치된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조사 결과에서 보듯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조사 >

구 분	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	-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46.4%으로, ^(1위) 감정적 어려움 경험, ^(2위) 치료 필요 경험, ^(3위) 자살 시도 등 경험
정책적 필요도	-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89.5%로, ^(1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2위) 정신건강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 자료: 보건복지부

유사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심리상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³⁾되는 등 국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로,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2020년도의 경우 2011년 대비 6.9% 증가에 그쳐 실제적인 수요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고⁴⁾,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10명 중 9명은 전문가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를 찾지 않는 이유 중 14.7%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였다고 조사된 바 있음⁵⁾.

3) 2019. 7. 19. KBS 추적 60분에서,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심리상담소 개설 자격 기준 부재, 심리상담사 범죄행위 처벌 규제 미비, 전자 빌찌 착용자의 심리상담소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4)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재인용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일반인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더라도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다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⁶⁾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 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국가자격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으며, 민간자격에는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인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공인자격'이 있음.

5)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재인용

6)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자격의 구분>

구 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근 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법률	「자격기본법」	
개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유형	국가자격 중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자격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
시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직업능력연구원	

- 이러한 자격증 구조에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요 국가자격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교육부 소관으로는 전문상담교사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는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음.

<심리상담 분야 주요 국가자격 현황>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명칭	〈정신건강전문요원〉					장애인 재활 상담사	전문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 심리사	직업 상담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사	정신건강 작업 치료사						
소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 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초·중등 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업무 범위	(공통)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재활·생활, 직업 훈련, 정신질환자 및 가족 권익보장, 행정지원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상담·정보 수집 ▲ 장애 진단·평가 ▲ 재활서비스 운영 ▲ 직무 개발 등 시행	▲ 학생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 ▲ 교우·학습·진로 폭력예방 상담	▲ 청소년 문제 개입 의뢰 등 ▲ 매체 검사 및 심리검사	▲ 심리평가, 검사, 치료 상담, 재활 교육, 자문 등	· 직업소개, 직업관련 검사해석, 직업상담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역시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⁷⁾할 수 있는데, 현재 심리상담분야 공인민간자격은 없으며, 등록민간자격의 경우에는 이 분야 우리나라 주요 학회로서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일반심리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이 있음.

<국내 주요 학회 발급 민간 자격증 종류 현황>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일반심리사	• 전문상담사 1급 • 전문상담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 임상심리전문가

그러나, 그 외의 기관에서도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심리상담’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2024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 자격증은 총 2,756건이 검색됨. 이 중에서 예컨대,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자격증 현황만 보더라도, 노인심리상담사·실버심리상담사·노인미술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범주의 자격증이 30여 개의 기관에 의해 등록된바,

7)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는 「자격기본법」 제17조⁸⁾에 근거하여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고, 관계 주무부처도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등만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임.

□ 이러한 상황은 국가자격 중 예컨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⁹⁾에서 수련기관에서의 수련, 보수교육,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

8)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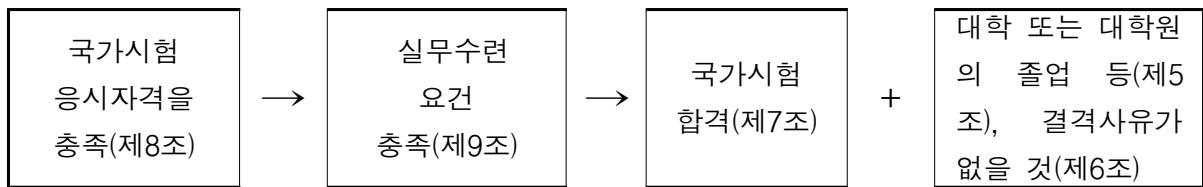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조와 비교할 때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

다.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는 절차 및 총괄적 쟁점

-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련 요건을 충족한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그 밖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는 절차>



그리고 전문심리상담사가 전문심리상담사의 직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켜야 할 의무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등이고,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민간자격의 난립과 전문성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점을 보완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정

안의 전문심리상담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국가자격은 차별성이 불분명함에도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 심리상담서비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유관 학회 및 기관 간 갈등이 아직까지 존재하므로 서비스의 정의, 유형, 제공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자격제도에 대한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임.

라.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 및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안에서의 심리상담의 정의와 영역이 광범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학습상담 등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으며, 전문심리상담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담임교사와는 내담자인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도 필요함.○ 또한, 제정안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상담 관련 다방면에서의 상담에 과도한 제약이라 보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안의 기준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격 요건에서 심리상담관련 과목의 이수 뿐 아니라 학위 소지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 결과 내담자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민간자격증을 심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할 경우 심리상담의 전문성 저하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대한정신건강 사회복지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안의 법안명칭은 기존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분야의 국가 자격체계를 부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심리상담은 전문심리상담사에게만 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으며,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전문심리상담사 자격기준과 전문상담 영역은 기존 자격 체계에 혼란을 가져옴. ○ 또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자의 상담업무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됨.
대한정신재활시설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신설은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와 상당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전문심리상담사의 활동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경계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국심리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의 정의가 모호함. 전문영역인 트라우마 상담부터 목회, 호스피스, 예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존재하는 상담이 포함되어 전문상담 영역이 모호함 ○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1급 자격증을 곧장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존 1급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함.

자료: 보건복지부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

□ 제정안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전문심리상담사 등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상담”이란 마음 건강,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과 같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조력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2. “전문심리상담사”란 상담 관련 교육과 실무수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의 전문영역”이란 전문심리상담사가 접하는 대상과 문제 유형에 따라 개인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노인상담, 가족상담, 기업·조직상담, 군 상담, 진로상담, 학습상담, 중독 상담, 트라우마 상담, 명상상담, 영성상담, 목회상담, 호스피스상담, 예술상담 등으로 분류한 상담영역을 말한다.
4. “수련기관”이란 전문심리상담사 실무수련을 위해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이 인증한 기관을 말한다.
5. “내담자”란 전문심리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수련기관 등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인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한국전문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이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및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1·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및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 한국전문심리상담자격관리원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전문심리상담사 1급과 2급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시행 및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직무) ① 2급 전문심리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한 평가
3.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4. 그 밖에 상담직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급 전문심리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상담에 관한 자문 및 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교육과 지도·감독
2. 그 밖에 상담직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직무) 규정을 통하여 전문심리상담사는 1급과 2급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후 각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직무를 열거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유사 자격증을 보아도 정신건강전문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모두 1급과 2급으로 운영 중이어서 제정안도 이러한 체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 2급 전문심리상담사와 차별화된 1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직무를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3호 “심리상담의 전문영역”에 대한 정의규정은 상담 영역을 다양하게 특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

서 정의규정 이외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고, 기준에 상담 업무가 이루어지는 분야도 거론함으로써 실무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7호 “한국전문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 조항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를 하는 기관을 전제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이러한 기관의 설립이나 역할 등에 대하여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자격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6호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 및 제8호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은 제정안에서 그 역할이 개괄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명칭의 기관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든지 다른 기관을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으로 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그러한 방안으로는 예컨대, 신설의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¹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처럼

10)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설립등기 사항, 수행하는 사업 등을 명확히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3. 13.>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법률 자체를 제정하거나, 「지방공기업법」 11)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처럼 법률 내의 한 조문 형태로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수행하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결격사유(안 제5조, 제6조)

- 제정안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하여 1급과 2급 전문심리상담사를 분류하여서 규정하고, 또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전문심리상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열거함.

제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순서로 1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후, 제7조에 따른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순서로 2급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후, 제7조에 따른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심리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제8조(응시자격)에서 국가시험에 대한 자격임을 명확히 하는 조문 제목을 쓰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5조(자격)은 제5조(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으로 명확히 자격의 명칭까지 써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 심리상담분야 주요 국가자격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비교하여

제정안의 자격 요건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동일한 위상에 두는 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임.

<심리상담 분야 주요 국가자격의 기준 현황>

		시험 유무	자격기준	
			1급	2급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X	(1) 석사*+3년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3) 임상심리사 1급+ 3년수련 * 심리학	학사*+1년수련 * 심리학
	정신건강 간호사	X	(1) 면허+석사*+3년수련 * 간 호학 (2) 2급 후 5년 근무 (3) 2급+정신간호분야조교 수	(1) 면허+1년수련 (2) 정신전문간호사 자격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X	(1) 석사*+3년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1급 +1년수련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X	(1)면허+석사*+3년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 직업치료학	면허 +1년수련
장애인 재활상담사		○	(1)장애인재활 학/석/박사 (2)2급 후 3년 근무 (3)사회복지사+5년 근무	(1)장애인재활 전문학위 (2)3급 후 2년 근무 (3)사회복지사+3년 근무
전문상담교사		X	(1)2급↑교원자격+ 3년 경력·양성과정 (2)2급 후 3년+ 자격연수	(1)상담심리 학과 졸업+교직학점 (2)대학원(전문상담) 이수+석사
청소년상담사 ¹²⁾		○	(1)상담분야 박사 (2)상담분야 학사 +4년 실무 (3)2급취득+3년실무	(1)상담분야 석사 (2)상담분야 학사 +3년 실무 (3)3급취득+2년실무
임상심리사		○	(1)2급↑교사자격+ 3년 경력·양성과정 (2)2급 후 3년 + 자격연수	전공불문 학사이상 + 1년↑실습 /2년↑실무
직업상담사		○	(1)2급+ 2년 실무 (2)3년 실무	-

자료: 보건복지부

12) 청소년상담사는 1,2,3급으로 나뉘어짐.

다. 국가시험과 응시자격, 실무수련(안 제7조부터 제9조)

□ 제정안에서는 각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각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을 아무나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두도록 함. 또한 국가시험 응시 전 실무수련까지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7조(국가시험) ① 1급 및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다.

② 국가시험과목은 1급은 수련지도감독, 상담행정 및 정책,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연구방법 4개를 포함하여 이외에 전문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한다.

③ 국가시험과목 2급은 상담이론, 상담면접, 심리검사, 집단상담, 상담윤리, 상담실습, 다문화 상담 7과목을 포함하여 이외에 2급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험의 과목 및 방법, 유사과목 인정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문심리상담사 업무에 종사하고 제9조제1항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제9조제1항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실무수련) ①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수련과 이에 대한 수련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 1급 실무수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련시간 및 2급 실무수련시간을 포함하여 5천 시간 이상

<p>가. 실무수련 사항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를 포함한다.</p> <p>나. 이외의 수련사항은 전문영역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정한다.</p> <p>2. 2급 실무수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련 시간을 포함하여 2천 시간 이상(실무수련 사항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기관 및 실무수련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제정안은 시험과목을 법률에서 일부 명시하고 그 밖의 과목 등에 대한 사항을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 시험과 관련하여 다수의 입법례¹³⁾에서 시험과목과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과목은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

1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①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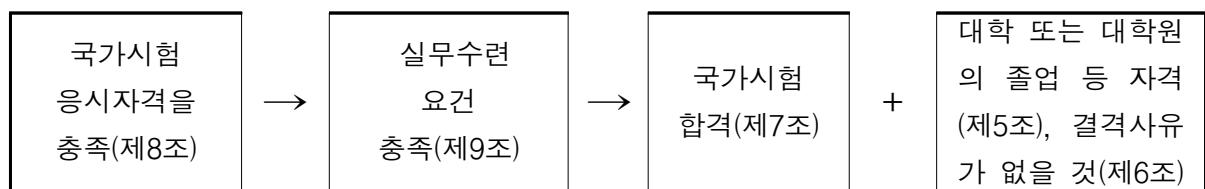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소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둘으로써 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이 국가시험을 시행하더라도, 그 실시 주체는 공적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예컨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주관한다는 규정을 두고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형식이 될 수 있음.
- 셋째, 제정안 제7조제4항에서는 ‘유사과목 인정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바, 유사과목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유사성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용어이므로 삭제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한 ‘이외에 전문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임.
- 넷째,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응시자격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지적이 가능할 것임. 응시자격 수준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해당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 볼 수도 있으나, 당장 법이 시행된 후 자격증 배출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 심리상담 국가자격의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섯째, 제9조제1항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수련과 이에 대한 수련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여 실무수련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는 과거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변리사, 회계사 시험처럼 일단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마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토록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경우 과연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응시자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지와 수련기간 동안의 소득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는 절차>



- 여섯째, 제정안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1급 실무수련’, ‘2급 실무수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문맥상 1급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2급 전문심리상담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수련을 가리키는바 1급 전문심리상담사 실무수련, 2급 전문심리상담사 실무수련으로 수정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라.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안 제10조)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박탈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제10조(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 등과 관련한 사항
2.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박탈 및 징계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제정안은 어떤 경우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자격 박탈이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법에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마.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교부(안 제11조)

- 제정안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입법례¹⁴⁾를 참고하여 그 자격증의 대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

여 및 알선 금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제11조(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등급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바. 전문심리상담사 등록 및 등록거부와 취소(안 제12조부터 제14조)

□ 제정안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가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 등록거부 사유와 등록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위법한 상담사가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2조(전문심리상담사 등록) ① 전문심리상담사가 제3조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직무를 개시하여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거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훈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4조(등록취소)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등록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3. 사망한 경우

□ 다만,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문심리상담사가 어느 순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지하기 위하여 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¹⁵⁾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임.

사. 상담센터의 개설과 등록 취소(안 제15조, 제16조)

□ 제정안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가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록을 거치도록 하되, 개설 등록 취소 사유도 규정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자격 등록 뿐 아니라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센터에 대하여도 등록하도록 하여 잠재적인 내담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참고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갱신 주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연수의 대상·방법·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담센터의 개설)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심리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

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전문심리상담사가 상담센터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개설 등록을 한 전문심리상담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공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상담센터의 개설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행위를 하게 한 경우
4.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수정한 경우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유출하는 경우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
려주는 경우

□ 다만, 상담센터의 개설 등록 취소에 관하여는 제정안에서 그 사유에 대하여 각호로 열거하고만 있는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¹⁶⁾도 있음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3. (생략)

을 참고하여 제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안 제10조의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아.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 등 작성 및 보존에 대한 의무, 기록 열람에 대한 의무 등을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의무 이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제17조(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전문심리상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보장의무) 상담직무를 수행하였던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수행하고 있는 전문심리상담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상담기록부 등) ①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및 그 밖의 상담에 관한 기록(이하 “상담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상담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록 열람 등) ① 내담자는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본인에 관한 상담기록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심리상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유출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명의대여 등 금지) ① 전문심리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보수교육) ① 전문심리상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전문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의 비밀보장의무는 전문심리상담사가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형태로든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며, 안 제20조 제2항에서의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직무상 비밀 여부와 관련 없이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차원으로서 법익의 차이가 있다고 보임¹⁷⁾.

- 이 의무 위반 시 상담센터의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담사 개인의 위반이므로 상담센터가 아닌 상담사 자신의 자격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한편, 안 제21조에서 전문심리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문심리상담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 위와 같은 명의 대여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알선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례¹⁸⁾가 있

17) 다만, 두 의무 위반 시 처벌 형량은 안 제3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동일함.

18)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

음을 참고하여 제정안에도 이를 반영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자.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는데, 이 협회의 사업들을 보면,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정책적 조사·연구,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경영지도 등을 포괄하여 공적인 사업과 이익단체적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음.

제23조(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	①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연구와 발전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심리상담에 관한 정책·제도·법령 등의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2.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경영지도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별 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⑦ 협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4조(윤리규정 제정)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상담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다만, 제정안은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가 그 명칭으로부터 전문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결사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와 같은 공신력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유사한 입법례¹⁹⁾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컨대 우선 협회의 설치 규정을 ‘둘 수 있다’와 같이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보임.

19)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전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차. 보칙(안 제26조부터 제30조)

□ 제정안은 전문심리상담사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상담센터에 대하여는 자료제출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음.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제30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상담행위의 제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상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담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전문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수수료 부과 근거에 대하여는 「의료법」²⁰⁾제85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납부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해당 입법례에서는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정안에 반영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제정안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인들과의 대화도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는 해당 조문은 ‘전문심리상담’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되, 어떤 상담이 전문심리상담이고 어떤 상담은 사회상규²¹⁾에 따라 허용되거나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상담²²⁾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단서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허용되는 상담 양태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거나 유료상담이 아니면 허용되는 방식의 완화 규정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제정안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20) 「의료법」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21)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2) 일반적인 상담행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종교인과 신앙인 사이 등에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활동으로 볼 수 있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민간자격의 경우 그 이름이 ‘상담사, 심리사, 미술심리상담사, 시니어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전문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지도사, 미술정서인지상담사’ 등으로 아주 다양한바, 유사한 명칭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거나 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명칭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카. 벌칙 등(안 제31조, 제32조)

□ 제정안은 제정안의 주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지되는 행위 유형의 다양성에 비하여 일률적으로 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위법성을 형량하여 제2항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재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수정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유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6. 제27조를 위반하여 상담행위를 한 자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로서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상담기록부 등 내용의 확인 요청을 거부 한 자

②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타. 부칙

□ 제정안은 경과조치에서 기존의 상담사와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자격과 제12조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사 등록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상담센터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상담센터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자격기본법」 제11조²³⁾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제정안이 심리상담 체계를 모두 제정안의 체계로 편입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기존의 체계는 존중하되, ‘전문심리상담사’ 자격만을 신설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요건이 현행 자격보다 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5년 내에 강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별도의 노력을 쏟아야 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음.

□ 그리고 부칙 제4조는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사’, ‘그 자격의 인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명확하며, 특히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더욱 그러함.

이에 이미 「자격기본법」 제19조²⁴⁾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23)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4)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공인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지도·감독²⁵⁾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정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안으로는 경험이 짧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98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지도·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